

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)

※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 번호	접수 일시	발급 일시	처리 기간	즉시
소유자	성명(명칭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
	전자우편	(휴대)전화번호 (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)		
자동차	등록 번호	색상		
	사용 본거지 (주민등록지,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)			
변경 사항	[]명칭		[]자동차 사용 본거지	[]자동차의 용도
	[]사업자등록번호		[]자동차등록번호	[]기 타
변경 내용	변경일	변경 전	변경 후	

군 산 시 장 귀하

불 입 : 위임자의 신분증사본, 법인은 인감증명서

210mm×297mm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m²]

신청인 제출 서류	1. 변경등록 신청 사유(변경 명세)를 증명하는 서류(사업용 자동차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.) 1부 2. 자동차등록번호판(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.) 2매 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,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·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) 각 1부	수수료 1,300원 (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.)
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4.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,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(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) 5.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) 6. 자동차등록원부	

유의사항

-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(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.)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제1항)
 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3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)
-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, 자동차 소유자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.
- (휴대)전화번호와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(리콜 등)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,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